

의안번호	제 270 호
의결년월일	1995. 4. 7. (제 32 회)



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년월일	1995. 3. 27.

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270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5. 3. 27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하이면 덕명리 자연부락인 제전은 덕명과는 지형적으로 원거리에 있으며, 도 청소년 수련장 유치로 주민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현 상태로는 일선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,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 하이면 덕명리 덕명을 덕명과 제전으로 분동하여 각각 이장은 두도북 함으로서 행정 수행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.

2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이장 및 관할구역중 하이면 덕명리 이장 정원 "1"를 "2"로 하고, 관할구역 "덕명"을 "덕명", "제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【별표】이장및 관할구역(제2조관련)				【별표】이장및 관할구역(제2조관련)			
읍면	리별	정원	관할구역	읍면	리별	정원	관할구역
하이면	덕명리	1	덕명	하이면	덕명리	2	덕명 계 전